#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문

##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· 납부해주세요!

○ **신고 대상 : '22년 12월 결산 법인('22년 귀속 법인 소득)**

○ **신고·납부기한 : '23년 5월 2일(화)까지**

-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이내 신고·납부
- 단, 수출중소기업 등 직권연장 대상 법인은 8. 2(수)까지 납부

○ **납세지 :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**
**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)**

○ **위택스(www.wetax.go.kr)및 이택스(http://etax.seoul.go.kr)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**

- 단, 이택스의 경우 서울 내에 사업장 전체가 있는 경우에 신고 가능

##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시 유의사항

○ **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·납부**

- 단, 특별·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(모법인의 본점) 또는 주사무소(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) 소재지에 일괄 신고·납부함
-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

○ **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**

-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
- 필수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가능하며, 미제출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

○ **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(○○구청 홈페이지)**

→ 홈페이지의 서식 다운로드 경로 설명

## □ 안내문(뒤)

# 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### 1 과세체계 개편(독립세 전환)

○ '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액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신고·납부하는 방식에서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세율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한 공제·감면 등을 적용하여 신고·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.

| 종 전 〈부가세 방식〉 | 변 경 〈독립세 방식〉 |
|---|---|
| 국세 **결정세액** × 부가세율(10%) | **과세표준** × 세율(지방세법 §103조의20) - 공제·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) |

### 2 세율(지방세법 §103조의20)

| 과세표준 | 속산법 | | 세법상 계산법 |
|---|---|---|---|
| | 세율 | 누진공제액 | |
| 2억원 이하 | 1% | - | 과세표준 × 1% |
|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| 2% | 200만원 | 200만원 + (2억원 초과 × 2%) |
| 200억원 초과 3천억 이하 | 2.2% | 4,200만원 | 3억9,800만원 + (200억원 초과 × 2.2%) |
| 3천억 초과 | 2.5% | 94,200만원 | 65억5천8백만원 + (3천억 초과 × 2.5%) |

### 3 세액 계산(지방세법 §103조의21)

법인지방소득세 차감납부할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·감면 + 가산세 - 기납부세액

### 4 제출서류(지방세법 §103조의23)

| 분류 | 종류 | 서식 |
|---|---|---|
| 신고서 |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| 별지 제43호 |
| 첨부서류 |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| 별지 제43호의2 |
| | 안분명세서 | 별지 제44호의6 |
| | 공제(감면)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| 별지 제43호의3 |
| | 가산세액 계산서 | 별지 제43호의4 |
| | 특별징수세액명세서 | 별지 제43호의5 |
| | 재무상태표 | |
| | 포괄손익계산서 | |
| |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 | |
| | 현금흐름표 →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| |
| | 소급공제환급신청서 → 해당 법인만 | 별지 제43호의9,10 |
| |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 | 별지 제43호의12 |
| |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→ 해당 법인만 | 별지 제43호의14 |
| 기타서류 |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→ 해당 법인만 | 별지 제43호의13 |